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7월 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7월 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•제105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7월10일) 상정

•제105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7월10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상문)

개정이유

- 일반구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는 대신 동기능전환 업무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(구별행정6급각1명)을 승인함에 따라
-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동기능전환 담당 보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

주요골자

- 총 정원 : 1,959명(안 제2조)
 - 집행기관 : 1,930명 → 1,933명(+ 3)
 - 의회 : 26명
- 정원 증원내역 : 3명(행정6급 : 3명)
-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

기 관 별	당 초	변 경	증·감
계	1,956명	1,959명	+ 3
집행기관	1,930명	1,933명	+ 3
의회	26명	26명	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○ 승인 받은 팀장 3명을 어느 부서에 배정 받았는지?	<input type="radio"/> ○ 3개 구청 총무과에 배정 되었습니다
<input type="radio"/> ○ 의회에 홍보팀이 없는데 만들 의향은 없는지?	<input type="radio"/> ○ 현재는 어렵고 향후 정부 기구개편 작업시 맞춰 검토하겠습니다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의 번 호	제145호
의 결 년월일	2003. 7. 15 (제105회)

제출년월일 : 2003. 7. 3

제출자 : 부천시장

제안이유

- 일반구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는 대신 동기능전환 업무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정원(구별 행정6급 각1명)을 승인함에 따라
-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동기능전환담당 보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음.

주요골자

- 총 정원 : 1,959명
 - 집행기관 : 1,930명 → 1,933명(+3)
 - 의회 : 26명
- 정원 증원내역 : **3명** (행정6급 : 3명)
-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

기관별	당초	변경	증·감
계	1,956명	1,959명	+3
집행기관	1,930명	1,933명	+3
의회	26명	26명	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1,956명”을 “1,959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930명”을 “1933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)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956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930명</u>2. (생략)	<p>제2조(정원) ----- <u>1,959명</u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933명</u>2. (현행과 같음)